고령자 일자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일자리]

이 콘텐츠는 전직퇴직을 준비하거나 구직을 원하는 40~50대 이상 중장년과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이직전직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구직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1
1.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4
1.1.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4
1.1.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4
2.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 7
2.1.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7
2.1.1. 고령자 일자리.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7
2.1.2. 고령자 역량 강화하기 8
2.1.3.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9
3. 고령자 일자리 찾기 11
3.1. 전직 및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 11
3.1.1.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11
3.3.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15
3.3.1.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15
3.3.2. 민간형 일자리 지원 18
3.3.3.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19
4.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20
4.1.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0
4.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
4.1.2. 고령자 고용지원금 23
4.1.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26
4.1.4.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9

1.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1.1.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1.1.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의 개념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정부와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책무

▪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인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 ※자세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2항).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 자세한 고령자 일자리 정보는 이 콘텐츠의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고령자 일자리를 찾고싶어요-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 이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진정과 권고의 통보

▪ 위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의 시정명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2항).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3항).

해고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2. 고령자 구직 준비하기

2.1.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2.1.1. 고령자 일자리.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고령자 일자리 정보 찾기

다양한 일자리 정보 확인하기

▪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고용24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상담 및 면접을 통해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로 선정되면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확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받은 후 근로활동을 실시합니다(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참조).

정부지원 일자리 정보 찾기

▪ 정부지원일자리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자형 일자리도 포함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테마별-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참조).

> ※정부지원 일자리 찾기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테마별-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정보 찾기

▪ 워크넷의 고령자 우대 채용관에서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민간 일자리 정보를 따로 모아 제공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테마별-고령자 우대 채용관 참조).

> ※ 민간 일자리 찾기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채용정보-테마별-고령자 우대 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일자리 정보 찾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찾기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노인일자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찾기

▪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시니어인턴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고령자 역량 강화하기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역량증진교육 프로그램

▪ 직업기초역량증진교육은 정보화 등 기초역량(직업기초능력) 증진 활동의 부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및 근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프로그램-직업기초역량 증진교육 참조).

이용 대상

▪ 40세 이상 중장년 중에서 정보화 등 기초역량(직업기초능력) 증진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및 근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직업기초역량 증진교육 참조).

서비스 내용

▪ 중장년의 성공적인 평생현역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최소 4시간 이상의 다양한 교육이 제공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프로그램-직업기초역량 증진교육 참조).

역량분야	교육 예시
일터기반 성장추구형	– 직업정보탐색, 직업체험 – 온택트 시대의 업무 효율 높이기 –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워킹툴 활용법
의사소통능력	– MZ 세대와 상생의 소통 스킬 –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디지털 툴 활용스킬
문제해결능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점기반 셀프리더십 – 스마트폰 영상편집을 통한 퍼스널 브랜딩
자기개발능력	– 내 말의 영향력을 높이는 조직 내 소통의 기술 – 사이버 공간에서 품위 있는 중장년 되기
대인관계능력	– 일하는 중장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조직에서 원하는 중장년 신입사원의 자세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프로그램-직업기초역량

증진교육 참조).



※직업기초역량증진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센터소개>로 하시면 됩니다.

2.1.3.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돕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 및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별표 참조).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

-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은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캠퍼스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한국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안내-비학위직업훈련과정-신중년 특화과정).

직업환경 적응훈련

▪ 고령자가 직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훈련을 실시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고령자 일자리 찾기

3.1. 전직 및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

3.1.1.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취업(재취업)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① **재직자**의 경력설계, ② **퇴직(예정)자**의 전직(轉職)과 ③ **구직자**의 취업(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인생후반부 계획을 세우세요.

생애경력 설계하기

▪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구분		내용
재직자	40대 경력전성시대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0대 경력확장시대	5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경력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의 생애를 되돌아보며 평생 경력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60대 경력공유시대	60세 이상 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삶과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생애 중간 시점에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제2 인생 준비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신청

▪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는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생애경력설계 참조).

전직 및 재취업을 원하는 모든 퇴직(예정)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 "전직지원 서비스"는 전직(轉職)을 원하는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전문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참조).

▪ 전직지원 서비스의 참여대상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이며 전직지원 서비스 기간은 서비스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참조).

전직지원 서비스의 내용

1:1 맞춤 재취업·전직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구직 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문 컨설턴트 배정 •개인별 경력 및 목표 체계적 분석 •취업 및 창업 1:1 상담지원 •이력서 작성, 면접 코칭 등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 •기업에 적합한 인재추천 •중장년 인력풀 운영 및 매칭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공간 및 휴게공간 제공	•재취업 역량강화 특강 및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취업동아리 운영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전직지원 서비스의 신청절차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

재취업지원서비스

▪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 이 중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참조).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취업 알선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사업주는 위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

▪ 사업주는 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정년퇴직 예정자의 업무몰입도 높이는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

A기업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전직지원 교육**을 **지원**하는'시니어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했다.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직 시 직무전문성, 업무성과, 인사평가, 자격증 보유, 전·현직 관리자의 평가와 동료들의 인터뷰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시니어 컨설턴트로 뽑힌 직원은 최장 2년간 고용되며,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팀 관계자는 "정년퇴직을 앞두면 업무집중도와 몰입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인데 시니어 컨설턴트 제도가 퇴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 2021. 35면 참조>

퇴직(예정)자에게 체계적인 퇴직 준비를 지원합니다.

전직스쿨 프로그램

▪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업 및 전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력목표 수립 및 전직준비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전직스쿨 프로그램 참조).

※ 기업 경영난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예정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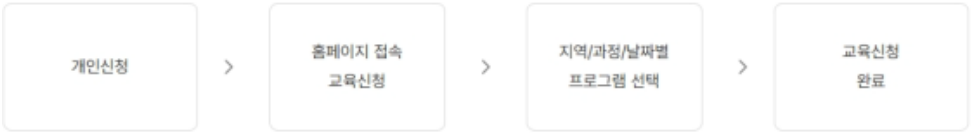
전직스쿨 프로그램의 내용

기업과정	• 대상: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운영: 기업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조율 후 탄력적으로 운영
전직스쿨 일반과정	• 대상: 40세 이상 기업 계열사/동종 업종/퇴직시기가 유사한 퇴직(예정)자 • 운영: 기업의 퇴직 규모 10인 이하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월별 상설과정 운영
직업체험 과정	• 대상: 40세 이상 기업 퇴직(예정)자 • 운영: 퇴직 전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설정에 도움 되는 과정을 12개 센터와 업종별 1개 센터에서 운영 (예시: 목수, 사진작가, 드론 조종사, 바리스타, 도배전문가)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전직스쿨 프로그램 >

전직스쿨 프로그램의 신청

▪ 기업 퇴직(예정)자는 www.work.go.kr/4060hope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전직스쿨 프로그램 >

구직스킬 향상! 구직자에게 재도약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재도약프로그램

▪ "재도약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직 및 전직, 재취업을 위한 구직 스킬 향상과 구직의욕고취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른 재취업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재도약 프로그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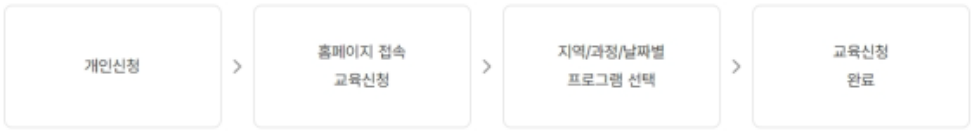
재도약프로그램의 내용

모듈명	모듈개요	세부내용	시간
오리엔테이션	• 집단 만남의 구조화	• 프로그램 목적 및 취지 안내 • 자기소개 및 친교의 시간	2시간
숨고르기	• 이전 삶 되돌아보기 • 성공적인 노후설계	• 이전의 삶 되돌아보고, 퇴직 후 변화 관리와 실직충격 완화하기 • 인생설계 및 생애 속 직업의미 확인	3시간
출발선 서기	• 직업적성흥미검사 • 경력 및 이력 분석	• 직업 적성, 흥미, 가치관 등 검사 • 구직계획 수립	4시간
도움닫기	• 진로 설정 • 취업전략 수립	• 진로목표 설정 • 구직전략 수립	4시간
발구르기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협상스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이미지메이킹/면접 전략/실습	5시간
도약하기	• 취업동아리 구성 및 구직활동	• 동아리회장 선출 및 활동계획 공유	1시간
착지	• 평가 및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과정 평가 및 마무리	1시간
총 운영시간			20시간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재도약 프로그램 참조 >

재도약프로그램의 신청

▪ 구직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재도약 프로그램 참조 >

※ 전국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서비스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3.3.1. 공공형(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 만 65세 이상 중 ① **공공형 일자리(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와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공공형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 운영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참여자의 활동기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이며,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다만,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경우,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로 연장활동가능

▪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교통비 일 3천원, 간식비 3천원(2시간), 6.5천원(3시간)]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6.5천원 + 교통비 3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5천원×2시간 + 교통비 3천원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6.5천원×3시간 + 교통비 3천원 + 간식비 6.5천원	29,000원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유형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참여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공공형 일자리 참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일자리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에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일자리는 10개월 운영되며,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입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활동비는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야간(22시익일 06시) 근로는 불가하며, 연장근로는 재해·재난 피해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가능

일자리 유형

사회서비스형 사업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소분류)**
공공시설 운영지원	• 보육시설 운영지원
	• 교육시설 운영지원
	• 돌봄·양육·생활시설 운영지원
	• 노인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
	• 지역 시설·기관 운영지원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14개)
	• 보건관리 지원(9개)
	• 환경보존 지원(3개)
	• 돌봄 지원(12개)
	• 국민편의 지원(17개)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 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2. 민간형 일자리 지원

※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의 공동 운영 및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등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 "민간형 일자리" 중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인 둘 이상의 노인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말하며,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릅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일자리 유형

사업유형	세부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카페, 편의점 등)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출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 민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3.3.3.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

※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의 일자리 알선 및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구인처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계합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사업

▪ "취업 지원 사업"이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다만, 다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중복 참여는 금지됩니다.

지원내용 등

▪ 주로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 취업 연계와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4.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4.1.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4.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1.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지원요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정년의 폐지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합리적 재고용 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30% 이하일 것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Q. 회사에서 2018년 1월 1일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경우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5. 21면 참조>

Q.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재고용)를 여러 번 도입하는 경우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고용 연령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근로자별 지급기간은 '25. 1. 1.부터 산정합니다(최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간주). 다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동일 법인 내에 직종별·지사(공장)별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같은 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최초 도입한 계속고용 제도만 인정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70면 참조>

지급금액 및 한도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1항).

▹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3항 단서).

지급기간

▪ "① ´24. 1. 1.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또는 ②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4. 1. 1. 전이라도 ´23.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본문 및 부칙(제2024-3호) 제2조제3항].

지원대상 근로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2.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따라 계속 고용될 것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73면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3.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4.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신청

▪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31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4.1.2.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고령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2호).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행정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지원요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급금액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제1항).

▹ "위의 지원요건 2.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함) ×분기 30만원" 을 지급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2항 단서).

지원대상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제2항).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지원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 그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2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만 지원 가능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3).

"신중년"이란?

▪ "신중년"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2022. 10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라목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1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5-6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5.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지원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6.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8.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9.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지원수준 및 내용

▪ 고령자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40만원을 매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2면 참조).

구분	연간총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240만원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4.1.4.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참여기업은 보조금,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지원내용

▪ 3개월간 현장실습 훈련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3">참여기업 지원금</th></tr>
<tr><th>지원금 형태</th><th>지원내용</th><th>총액</th></tr>
<tr><td rowspan="3">참여기업</td><td rowspan="2">일반형</td><td>인턴 지원금</td><td>•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td><td rowspan="2">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td></tr>
<tr><td>채용 지원금</td><td>•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td></tr>
<tr><td>세대 통합형</td><td>채용 지원금</td><td>•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td><td>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td></tr>
<tr><td>장기취업유지형</td><td>장기취업유지금</td><td>•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td><td>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td></tr>
<tr><td>수행기관</td><td colspan="2">위탁운영비</td><td>• 참여자 1인당 30만원</td><td></td></tr>
</table>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